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9. 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8월 8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년 8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4. 9. 8)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제3항)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안 제21조 제1항)
－천재, 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부료율이 1,000분의 25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함.
○대부료, 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퍼센트에서 15퍼센트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퍼센트 연체요율을 규정함.(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대현)
○현행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제외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 매입,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내무부 준칙과 서울특별시 준칙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4

제출년월일 : '94. 8.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 안 이 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제3항)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 (안 제21조 제1항)
－천재, 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부료율이 1,000분의 25인 "새마을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함.(안 제22조 제1항, 제2항)

○대부료, 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퍼센트에서 15퍼센트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퍼센트 연체요율을 규정함(안 제27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

제12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5.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② (생략) (신 설)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
제12조(사용허가 기간) ① (생 략) ②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생략)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 1.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5.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행	개 정(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 ③－⑦ (생 략)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 …… ……취락개선사업에…… …… …… …… …… ② …… …… ……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⑦ (생 략)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생 략)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 …… 제25호 …… …… …… 1－3(현행과 같음)